



# 企業經營과 稅金講話 8

企業經營의 合理와 効能을 為해 알기  
쉽게 읽어가는 稅金特講을 連載한다.

稅務經營管理란 무엇인가?

稅務管理會計란?

紙上配當이란?

公開法人이란?

李 文 宰

慶熙大 經營大學院 教授

## 第 8 章 稅務經營管理

### I. 稅務經營管理의 概念과 問題領域

近代의 企業經營은 租税負擔關係를 等外視하고  
서는 存在할 수 없다. 오늘날 企業이 稅務會計의  
理論과 技術의 實踐方法을 導入하여 研究함도 租税  
負擔關係와 密接한 必要性에 縁由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現象 곧 稅務會計上의 技術만으  
로는 決코 滿足할 수 없는 段階에 이르고 있는 実  
情이다. 다시 말해서 近代的 企業經營은 租税負擔  
關係를 管理的研究로서 企業의 經營決定과 經營管  
理面에서 稅務經營計劃(Tax Planning)을 세워 經營  
活動의 計劃을 通하여 「納稅后의 經營純利益」(Net  
income after taxes)의 極大化의 實現을 課題로 하

는 經營活動의 事前의 計劃의 調整의 研究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筆者는 이와같은 研究를  
課題로 하는 分野를 稅務經營管理라 불러 보고있다

稅務經營管理의 中心의 手法은 租税節約(tax  
Saving)을 企業의 經營計劃에 導入하는 것이며 그것  
은 「租税의 極小化」뿐만 아니고 「収益의 極大化」와  
「費用의 極大化」를 總合的으로 包攝하는 思考 方法  
으로서 積極的인 手法에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稅務經營計劃은 「稅務經營戰略」  
을 主要 內容으로 形成하고 그 具體的인 手法에는  
「稅務會計政策」과 「稅務經營政策」을 들수 있다.

따라서 稅務經營計劃은 稅務上 및 經營上の 代替의選擇(二者擇一)의 原理의 活用으로 企業經營活動의 計劃을 通하여 「納稅後의 經營純利益」의 極大化를 困謀하기 위한 企業經營活動의 事前的 計劃의 調整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企業經營計劃의 一環으로서 經營目的 達成을 위한 計劃設定에 稅務面으로서의 有効한 情報를 提供받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볼 때, 租稅問題는 企業經營上의 諸決定과의 関聯에 있어서 研究되어야 할 必要성이 切実히 要求되고 있음은 共感하는 事實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企業의 經營計劃이나 經營政策의 方案如何가 租稅負擔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点에서 認定이 되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企業은 經營設備政策(設備除却 更新政策, 經營補修政策, 設備擴張政策等), 販賣促進政策, 企業系列政策, 資本調達政策, 經營給与政策, 福利厚生政策, 配當政策等의 諸問題와 稅務問題의 関係를 追求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上述한 稅務經營計劃의 研究는 終來와 같은 單純한 過去의 実數數值에 대한 事後處理의 こと에서 Tax Planning을 主体로 하는 事前計劃의 乃至 事前管理의 것으로 進展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 終來와 같은 經理事務處理의 こと에서 企業의 經營者的의 觀點에서 取하는 經營計劃의 그리고 經營管理의 手法의 것으로 發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을 다시 整理하자면 「稅務經營管理」는 經濟의 影響 要因인 租稅現象을 個別經濟的 觀點에서 研究하는 稅務會計分野에 있어서의 管理論의 研究가 그 領域으로 된다는 것이다.

## II. 稅務經營計劃과 稅務管理會計

計劃의 樹立이란 意思決定을 뜻하는 것이고 目標, 方針, 節次 或은 順序로 理解되어 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計劃이란 特定의 經營問題를 解決하거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行動의 基礎가 되는 것이며 設定期 目標의 達成에 必要한 明細書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稅務經營計劃은 企業의 經營과 租稅負擔의 関係를 研究하고 管理하는 最善의 解決策 또는 方法을 選択 決定하는 것이 되는 것임으로

充分한 事案의 把握과 意思決定에 앞선 解析의 實驗의 過程 없이는 合理性있는 諸決定의 確保를 期할 수 없는 것도 事實이다.

會計職能에 있어서一般的으로 管理會計는 經營管理者의 内部的 必要性에 役活하는 企業會計의 管理의 機能으로 理解되고 있으며 그 特色의 領域은 經營管理者가 合理의 經營目的의 達成을 위한 企業의 歷史的 및 未來의 經營資料를 處理하는데 있어서 技術과 概念을 提供한다. 이런 觀點에서 稅務會計에 있어서도 對稅務官署라는 外部報告目的의 會計, 다시 말해서 企業外部의 慣習의 法律의 規制에 基因되는 稅務財務會計가 아닌 經營管理者의 必要에 副應하며 彈力의 으로 形成될 수 있는 内部目的의 稅務管理會計가 認定되어야만 稅務經營計劃에 有効한 經營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

要컨데 稅務經營計劃은 企業의 租稅節約으로 「納稅後의 經營純利益」의 極大化 實現이라는 企業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手段의 体系이며 그것은 基本目標 및 基本方針, 租稅制度와 그 变化에 関한 情報, 稅務管理會計를 通한 稅務經營分析, 實行目標등의 諸要素로 形成될 수 있다. 그리고 總合의 으로는 長期計劃, 中期計劃, 短期計劃 및 經常計劃으로 関聯지어 調整하여 稅務經營分析을 通한 診斷의 結果 障害 또는 制約되는 要因이 把握되면 代替의 方法을 選択하는등 總合의 管理가 必要하고 이와 같은 稅務經營計劃은 企業經營計劃의 主要 課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III. 企業形態와 稅務政策

稅務經營計劃에 있어서 企業形態의 選択은 第1段階 곧 基本의手段이며 그것은 企業形態의 如何에 따라 租稅負擔關係가 相異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負擔比較로 부터 始發하는데 現行稅制는 私企業인 個人에 대하여 所得稅法, 法人企業인 會社에 대하여 法人稅法을 適用하고 있으며 그 稅率에는 差異가 있다.

### ◇ 所得稅(事業所得 및 不動產所得)

(所得金額)	(稅率)
15万 원 以下	15%

15万원 초과	20%
30万원 "	28%
70万원 "	38%
150万원 "	48%

### ◇ 法人税

	非公開)	(公開)
100万원 以下	20%	16%
100万원 초과	30%	20%
500万원 "	40%	27%

法人과個人間의 負担의 軽重은 一定所得金額을 基準한 具体的인 租稅負擔의 対比分析을 通하여 檢討되어야 하겠으나 稅率이 높으면 負担도 많아지는 것임으로 所得 과 企業利益에 대한 所得課稅上으로 볼 때에는 法人企業이 個人보다 低率이므로 租稅節約이라는 見地에서는 一応 法人形態가 考慮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法人企業의 경우는 法人所得에 대한 法人税 以外도 利益配當에 따른 配當利子所得稅가 있으며 実務配當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留保된 所得에 대하여도 紙上配當이라 일컬어 配當利子所得稅가 課稅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形態의 選択과 租稅節約은 表見上의 稅率만으로 速斷할 수는 없다.

法人企業으로 決定된 경우에도 法人の 稅額에 따른 選択問題가 있다. 法人の 稅額에 따른 選択의 考慮는 営利法人의 稅率은 一律의으로 되어 있으나 會社의 稅額에 따라 稅務上의 取扱이 다른 部분이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듣다면 合名,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은 商法上 無限責任이 있음으로 國稅徵收法에서도 無限 2次納稅義務가 있다. 그러나 株式會社나 有限會社는 有限責任으로 株主가 會社에 대한 2次納稅義務도 出資를 限度로 有 limited responsibility이다. 또한 合名, 合資會社에서는 勞務出資도 할 수 있으나 余他会社에서는 不可能하다. 反面에 稅務上으로 合名, 合資會社의 勞務出資社員의 報酬는 損金으로 容認하지 않는 制約도 있다. 이밖에 資本市場을 通하여 株式的 大衆化로 公開法人이 되고자 할 경우는 株式會社만이 可能하다는 点도 檢討되어야 할 項目일 것이다.

이밖에 會社의 設立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諸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① 出資者(株主)에 대한 資金出處의 調查에 따른 対策…… 未成年者나 婦女子者로서 出處透明이 不明確한 경우라도 現行 制度上 配偶者와 直系尊卑屬간의 贈与는 150万원, 기타 親族간은 100万원이 贈稅課稅上 基礎控除로 하고 있음으로 이 点도 考慮의 対象이 되어야 하지 않을가 한다.

② 現物出資를 하는 경우에는 過大評価出資, 過少評價出資, 無收益資產出資에 대한 이른바 不當行為計算의 否認이라는 制約을 充分히勘案하여야 한다.

過大評価로 現物을 出資한 경우는 時価와의 差額은 出資가 없는 것으로 取扱하여 이에 関聯한 稅務上의 問題가 있다. 例를 듣다면 過大評価로 인한 時価와의 差額은 出資를 한 当該 株主의 貸与金으로 認定되는 取扱을 하는 수도 있는데 貸与金으로 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利子 과 認定利子가 計算되고 認定利子는 賞与로서 個人所得課稅까지 하게 된다.

따라서 現物出資를 하는 경우는 商法上의 變態設立에 関聯한 設立節次上의 制約과 함께 過大評価等 稅務上의 問題点도 檢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③ 株式會社의 경우는 稅制上 公開法人에 대한 優待가 있음으로 可能한 公開法人으로서의 資格을 具備하는 一連의 対策도 講究되어야 한다. 現行法上 公開法人의 要件은 従來의 그것보다 強化되기는 하였으나 公開法人에 대하여는 稅率의 差等 適用을 비롯하여 小額株主(總株式의 3% 以下 所有者)에 대한 配當稅의 非課稅, 綠色申告의 自動資格賦与 등 많은 恵沢이 있다.

公開法人이 되려면 設立에 있어서는 株式을 公募하고 證券市場에 上場하여야하며 株式의 分布는 3%미만을 所有한 株主(小額株主)가 200名 以上이라야 하고 그들이 所有한 株式數가 總株式의 30% 以上일 것과 株主 1人과 親族(民法上의 親族 및 事實婚關係者 包含) 및 特殊關係人이 所有한 株式의 合計가 總株式數의 51% 以下인 諸般 要件등을 具備하면 된다.

株式의 公募와 證券市場에의 上場등은 證券去來法과 有價證券의 上場에 따른 證券市場이 要求하는

条件 등 많은 制約이 介在하고 있으나 可能한 경우  
라면 이를 위한 努力이 所望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④ 会社를 設立하는 경우는 定款에 記載하는 事業年度에 대해서도 稅務政策上 若干의 檢討가 必要하다. 事業年度란 会社의 會計期間으로서 法人税法上의 課稅期間이며 商法에나 稅法上 1年을 초과할 수 없다.

事業年度에 있어서 稅務政策上 考慮하고자 하는 점은 開始日과 終了日에 대한 時期인데 이는 法人税務上 法人税의 申告期限이 事業年度 了日 곧 決算日로 부터 60일 내로 되어 있음으로 累積과 企業의 事情上 어느 時期에 決算을 하는 것이 年中 가장 理想적인가 하는 点을 考慮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企業의 実情에 비추어 1年中 어느 時期가 決算과 納稅에 있어서 便利하겠는가 하는 点을勘案하여 事業年度의 期間을 設定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問題点이라 할지 모르나 后日의 実務上 事業年度의 期間으로 인한 不便이 있다는 点에서 考慮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租税負担比較

所得金額(年間) ₩50,000,000의 경우 個人과 法人의 租税負担 比較

##### 1. 個人の 事業所得税 (年2期課稅)

$$\begin{aligned} 150,000 \times 15\% &= 22,500 \\ 150,000 \times 20\% &= 30,000 \\ 400,000 \times 28\% &= 112,000 \\ 800,000 \times 38\% &= 304,000 \\ 23,500,000 \times 48\% &= 11,280,000 \end{aligned}$$

$$25,000,000 \quad 11,748,500 \cdots 1期税額$$

$11,748,500 \times 2\text{期} = 23,497,000 \cdots$  年間 事業所得税額Ⓐ

##### 2. 総合所得税

다른 分類所得 없다고 仮定함.

$$\begin{aligned} 3,000,000 \times 30\% &= 900,000 \\ 3,000,000 \times 50\% &= 1,500,000 \\ 9,000,000 \times 55\% &= 4,950,000 \\ 35,000,000 \times 60\% &= 21,000,000 \end{aligned}$$

$$50,000,000 \quad 28,350,000 \cdots \text{綜合課稅算出税額}$$

$$28,350,000 - 23,497,000 = 4,853,000 \cdots \text{綜合課稅納付税額(B)}$$

#### 3. 総負担額

$$Ⓐ + Ⓛ = 28,350,000$$

\* 法人の 경우(非公開)

##### 1. 法人税

$$\begin{aligned} 1,000,000 \times 20\% &= 200,000 \\ 4,000,000 \times 30\% &= 1,200,000 \\ 45,000,000 \times 40\% &= 18,000,000 \\ 50,000,000 & \quad 19,400,000 \cdots \text{法人税Ⓐ} \end{aligned}$$

##### 2. 配当所得税

利益中 法定準備金 5%와 法人税額을 差減한 残額을 配当한 것으로 仮定함.

$$50,000,000 - (2,500,000 + 19,400,000) = 28,100,000$$

$$28,100,000 \times 20\% = 5,620,000 \cdots \text{配当税(B)}$$

##### 3. 総合所得税(1人株主로 仮定)

$$\begin{aligned} 3,000,000 \times 30\% &= 900,000 \\ 3,000,000 \times 50\% &= 1,500,000 \\ 9,000,000 \times 55\% &= 4,950,000 \\ 13,100,000 \times 60\% &= 7,860,000 \\ 28,100,000 & \quad 15,210,000 \cdots \text{綜合課稅算出税額} \end{aligned}$$

##### 4. 配当에 대한 法人税相当額의 $\frac{1}{2}$

$$\begin{aligned} 1,000,000 \times 20\% &= 200,000 \\ 4,000,000 \times 30\% &= 1,200,000 \\ 23,100,000 \times 40\% &= 9,240,000 \\ 10,640,000 & \cdots \text{配当에 대한 法人税額} \end{aligned}$$

$10,640,000 \times \frac{1}{2} = 5,320,000 \cdots \text{綜合課稅算出税額에서 控除한 金額}$

$$15,210,000 - (5,620,000 + 5,320,000) = 4,270,000 \cdots \text{綜合課稅納付税額(C) ○}$$

#### 4. 総負担額

$$Ⓐ + ⁁ + ⁂ = 29,290,000$$

(次号 계속)